

영등포구의회
제1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3. 3.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194호로 2017년 2월 1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고,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41조(과태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7. 1. 19. ~ 2. 8.)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며, 내용은 크게 과태료 부과와 신고포상금 지급 부분으로 구성 되어있음.

○ 본 폐지조례안의 주요 이유로

-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는 전문 신고자들이 의도적으로 위반사례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이 2008년도에 폐지됨.

- 따라서 현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상위법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 징수할 수 있으므로 본 폐지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전문개정 2008.3.21.]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4.1.21., 2015.1.20.>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비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 6의2.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 7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8.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 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10.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
16.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3.8.13., 2015.1.20.>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4.1.21.>

[전문개정 2008.3.2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09.4.6.]

[별표 8] <개정 2016.1.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다.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3호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				
가)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	100	200
나)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	50	100
다)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	30	50
라)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	10	30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가) 매장 면적이 333㎡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매장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매장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				

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경우		100	200	300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우		50	100	200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4)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30	50	1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10	30	5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5	10	3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3	5	10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 시설 운영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라.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1호	50	70	100
마.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4호	50	150	300
바.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5호			
1)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2)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50	100	200
3)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30	50	100
4)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10	30	50
사. 법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6호	50	100	300

아. 법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빈 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6호의2	50	150	300
자. 법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 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7호	200	250	300
차. 법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7호의2	200	250	300
카. 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2호	30	50	100
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재활용지정사업자의 경우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8호	200 150	250 200	300 300
파. 법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고품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9호	200	250	300
하. 법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0호	50	70	100
거. 법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1호	50	150	300
너. 법 제2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고품연료제품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2호	100	200	300
더. 법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3호	100	200	300
러. 법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4호	100	150	200
머. 법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5호	50	70	100
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6호	50	70	100
서.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3호	50	70	100